# 탈시설장애인 임시거처비 지원절차

#### ① 1차 신청(장애인⇒자립홈 운영자)

- 신청자격 : 자립홈 입주자로 선정된 시설 퇴소(예정) 장애인

- 신청서류 : 임시거처 지원신청서[붙임1], 신분증 사본

#### ② 임시거처 임대차 계약(자립홈 운영자⇔임대인)

- 임차인은 반드시 자립홈 운영자가 되어야 하고, 임대인의 경우 자립홈 운영자 와 무관한 자이어야 함(자립홈 운영자 소속 직원은 임대인이 될 수 없음)

## ③ 2차 신청(자립홈 운영자⇒시・군)

- 신청자격 : 해당 시·군의 자립홈 운영자로 선정된 자

- 신청기한 : 임시거처 계약 후 15일 이내

- 신청서류 : 임시거처비 지원 신청서[붙임2], 자립홈입주자 선정 확인서, 임시거처 임차계약서 사본, 운영자 통장 사본(별도 통장 신설)

#### ④ 신청 서류 확인(시·군)

- 대상자 시설 거주 및 퇴소유무 확인

- 임시거처 임대차계약서 내용 확인

### ⑤ 사업비 교부결정 및 교부(시·군 ⇒ 자립홈 운영자)

- ⑥ 사업비 집행(자립홈 운영자 ⇒ 임대인)
  - 사업비 신청은 임대차 계약 후 이루어지므로, 최초 월세금액은 사업비 수령 후 임차인 계좌로 입금
  - 이후 매월 월세 지급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입금

# ⑦ 정산(자립홈 운영자⇒시・군)

- 정산시기 : 지원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, 단 지원기간 중이라도 대상자가 자립홈에 입주했 을 경우 자립홈 입주일로부터 15일 이내
- 정산 첨부서류 : 자립홈 입주확인서, 월세납입증빙서류(무통장입금증 등)

#### [붙임 1]

# 이시기치 기위 시처서

신 청 자 인적사항	성 명			연락처				
	생년월일			성 별			□남, □여	
	장애명		장여	애등급	급	ই	중복장애명	
	거주시설명		시설 소재지					
	입 소 일			퇴소(예정)일				
상기 본인은 귀 단체(법인)에서 운영하는 자립홈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,								

자립홈 입주 전에 거주할 임시거처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)

00000 귀하